



(사단)경기경영자총협회 님 | 로그인아웃 | 사이트맵 | 고객센터

**사업소개**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운영기관**

운영기관 조회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

**마이페이지**

- 사업참여관리(도약장려금)
- 사업참여관리(미래청년)
- 사업참여관리(디지털)
- 사업참여관리(일경험)
- 나의 정보관리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2년 시행)

취업으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중소기업에 최대 12개월간 지원

더 알아보기
신청하기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2020년시행 / 2021년시행)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지원

더 알아보기


####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2021년 시행)

청년을 신규 채용한 미래유망기업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지원

더 알아보기


#### 공지사항 +

|                                |            |
|--------------------------------|------------|
|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등...  | 2022-02-23 |
| 2021년 채용 청년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 2022-01-27 |
|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FAQ 안내     | 2022-01-26 |
|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         | 2022-01-19 |

#### 서식자료실 +

|                                |            |
|--------------------------------|------------|
| [서식]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 2021-02-01 |
|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 2021-02-01 |
|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  | 2021-01-18 |
| [서식]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지급 산... | 2021-01-18 |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하기

# 기업 계정 로그인

고용노동부 (사단)경기경영자총협회 남 로그인 | 사이트맵 | 고객센터

사업소개 운영기관 알림마당 마이페이지

마이페이지 사업참여관리(도약장려금) ▾

## 공동인증 로그인

기업 공동인증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

**주의사항!**  
※ 개인 인증서는 사용하지할 수 없습니다.  
※ 기업 인증서 정보가 워크넷 기업회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인증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 [공동인증 보안프로그램 설치] 버튼을 클릭하면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가 진행됩니다.

**공인인증 보안프로그램 설치**

워크넷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보안안내 웹접근성정책 저작권정책 및 제휴문의 Open API 배너가져가기 고용보험 HRD-Net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27740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경로6 한국고용정보원  
Copyright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all rights reserved.  
워크넷시스템관련문의 workmaster@keis.or.kr 1577-7114

- 기업 공동인증서로 참여신청

## 사업참여관리(도약장려금)

### > 기업정보

[기업 정보 수정](#)

|     |  |
|-----|--|
| 기업명 | (사단)경기경영자총협회   |
| 지사명 | 본사   |
| 대표자 | 조용이  |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30번길 10, 중앙빌딩신관 2층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권선동) |

[참여신청관리](#)
[채용자명단관리](#)

-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참여에 대한 처리상태 및 협약체결상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참여신청 현황

등록된 참여신청서가 없습니다.

[사업참여 신청](#)

### > 참여신청서 변경신청 현황

등록된 참여신청서 변경신청 현황 정보가 없습니다.

##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참여 신청서

## ▶ 참여신청서

- \*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반드시 기입해주세요.
- 장시간 내용을 작성하시는 경우 저장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시저장 기능을 이용하시거나 메모장 등에 먼저 작성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담당 운영기관 선택

|          |              |        |
|----------|--------------|--------|
| 담당 운영기관* | 사단법인경기경영자총협회 | 운영기관찾기 |
|----------|--------------|--------|

## ▶ 대표 사업장 현황

|                   |                        |                  |  |
|-------------------|------------------------|------------------|--|
| 사업장명              | (사단)경기경영자총협회 (본사)      |                  |  |
| 대표자명              | 조용이                    | 기업유형*            | <input type="radio"/> 개인 <input checked="" type="radio"/> 법인 |
| 사업자등록번호<br>(지사번호) | 1358201714 (2)         | 법인등록번호           | <input type="text"/>   |
| 업종                |                        | 고용보험<br>사업장관리번호* | <input type="text"/> 관리번호찾기                                  |
| 소재지               |                        |                  |  |
| 피보험자 합계*          | <input type="text"/> 명 | 설립일              |  |

- 참여 신청서 하단에 있는 참여자격 제한 사유(지원계의 기업, 지원계외 청년)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업장
  - 대표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이 있는 경우 관련 사업장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사업장에 추가된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는 기존 피보험자 수 계산 시 사용됩니다.
  - 해당하는 기업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 수
  -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기준 참여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합계가 조회됩니다.
  - 단,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참여신청 직전 월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참여신청 직전 월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합계가 조회됩니다.
  - \* 고용보험 성립일은 참여신청서에 작성된 사업장의 성립일 중 가장 과거의 성립일 기준
- 기존 피보험자 수 : 대표 및 관련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 합산 후 평균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지원한도 : 기존 피보험자 수에 수도권 기업의 경우 50%,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100%를 곱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 올림(최대 30명)

▶ 관련 사업장 현황

|                                |  |
|--------------------------------|--|
| 사업장명                           | 업종   |
| 피보험자 합계 <input type="text"/> 명 | 고용보험<br>사업장관리번호 <input type="text"/> 관리번호찾기  |
| 사업자등록번호                        | 설립일  |
| 소재지                            | <input type="button" value="항목삭제"/><br><input type="button" value="계"/><br><input type="button" value="+ 항목추가"/> |

---

기준 피보험자 수\* (사업장 합산)  명 ※ 대표 및 관련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 합산 후 평균 산출. 소수점 이하를 올림

수도권 기업여부\*  수도권  비수도권

지원한도\*  명  
 ※ 기준 피보험자 수(수도권 50%, 비수도권 100%)로 조회,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합니다.

▶ 기업 구분(지원대상 기업 여부 확인)

기업 구분\* (해당되는 분야에 모두 체크)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 수 평균을 소수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5명 이상일 경우)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 (참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무역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 채용계획

|  |   |
|--|---|
| 채용예정인원* <input type="text"/> 명                           | 근로계약형태* <input type="text" value="선택"/>   |
| 근무시간* 주 <input type="text"/> 시간<br>※ 근무시간은 주 30시간 이상만 가능 | 월급여* <input type="text"/> 원<br><input type="button" value="항목삭제"/><br><input type="button" value="+ 항목추가"/> |

\* 사업장 현황 정보 입력

- 기업 구분 해당 분야 모두 체크

- 채용 예정인원은 수정하려면 행정적으로 번거로워  
 넉넉잡아 입력할 것

- 월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  
 청년마다 임금이 상이한 경우 평균임금을 작성 할 것

## ▶ 채용자 정보

- 동 사업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을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먼저 채용한 경우 (해당시 체크)
- 해당 채용자가 청년일자리포장지원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사업장의 피보합자 수 기준 피보합자 수 지원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성명

채용일

항목삭제

+ 항목추가

## ▶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선택 ▼



팩스번호

선택 ▼



이메일\*

@

기타(직접입력) ▼

## ▶ 첨부서류 등록

첨부서류

- ※ 개인정보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마스킹처리하신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 5인 미만 예외 기업 인증서류(해당지),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확인서 등을 첨부
- ※ 파일은 최대 5개까지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용량: 10MB 이하)
- ※ 등록 가능한 형식은 gif, jpg, jpeg, bmp, png, ppt, pptx, doc, docx, hwp, xls, xlsx, pdf, txt, zip, egg 파일입니다.

파일찾기

선택파일삭제

## \* 채용자 정보 입력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한 인원의 경우  
(사업 신청 전 미리 채용한 경우 (3개월까지만 소급적용)  
채용청년 이름, 채용일을 작성해야 함

-첨부서류는 신청 후,  
운영기관이 메일로 안내하고 있어 따로 첨부x  
\*메일확인 필수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 지원제외 기업(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           |
|---|-----------|
| ①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기업<br>* 성립 후 1년 미만 기업은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참여신청 직전 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br>* 단, 성장유망업종 등 예외 대상으로서 5인 미만인 경우 "아니오"에 체크<br>※ (주의)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 지연 등에 따라 추후 피보험자 수가 변동되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가 정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참여신청 승인 여부 및 지원 한도도 달라질 수 있음 | ○ 예 ○ 아니요 |
| ② 소비·향락업,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 ○ 예 ○ 아니요 |
|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학교   | ○ 예 ○ 아니요 |
|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 예 ○ 아니요 |
|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 예 ○ 아니요 |
|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 예 ○ 아니요 |
| ⑦ 고용보험료 체납기업<b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된 경우는 가능  | ○ 예 ○ 아니요 |
| ⑧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이전부터 지원대상 청년 고용이후 1년 동안 고용조정으로 인위적 감원이 있는 사업장<br>* 청년 채용일이 사업 참여 신청일 이전(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청년 채용일 1개월 이전부터 청년 고용 이후 1년 동안 고용조정으로 인위적 감원이 있는 사업장  | ○ 예 ○ 아니요 |
| ⑨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   | ○ 예 ○ 아니요 |

## \* 기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신청 자격 제한

- “예”로 체크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참여 자격의 제한 사항이 있으니, 운영기관의 확인이 필요함.

지원제의 청년(채용일 기준) ⇨ 채용 시 아래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① 채용일 현재 청년(만 15세~34세 이하)이 아닌 자  
\* 단, 근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  확인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인 자  
\* 취업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확인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단, "특례"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등)에 해당하는 자는 가능  확인

④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확인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확인

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확인

⑦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1년 이내에 (재)고용한 자  확인

⑧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 단, 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확인

⑨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확인

⑩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의 대상이라고 정한 자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이며,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일경험지원사업 등)에 참여하였으나,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지원금(장려금, 보조금 등 명칭 불문)의 반환을 명령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등 사업의 참여 및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예  아니오

### \* 청년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청년은 신청 자격 제한

- 해당 내용을 “확인” 체크 후 아래 사항 확인함을 “예” 체크하여 신청

##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부정수급 점검 등 | 신청 시점 ~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당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외국인 (\* 사업주가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 선택)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임시저장

참여신청

목록

## 사업참여관리(도약장려금)

### > 기업정보

[기업 정보 수정](#)

|     |  |
|-----|--|
| 기업명 | (사단)경기경영자총협회   |
| 지사명 | 본사   |
| 대표자 | 조용이  |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30번길 10, 중앙빌딩신관 2층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권선동) |

[참여신청관리](#)
[채용자명단관리](#)

-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참여에 대한 처리상태 및 협약체결상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참여신청 현황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5명)

[상세보기](#)

운영기관 | 사단법인경기경영자총협회 (031-8014-5481)

처리상태 | 신청    신청일자 | 2022-04-11    승인일자 |

협약체결상태 |    협약체결일자 |

[반려보완 사유](#)
[사업참여 신청](#)